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7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백혜련·윤재갑·김승원

양정숙 · 김남국 · 김회재

최기상 · 김영주 · 조승래

박홍근 · 소병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정부는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 역시 불가능함.

이로 인해 출국기간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하 고 불법 취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이에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제3항).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1.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 역이 선포된 경우
- 2.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
	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② <u>제1항</u> 에 따른 사용자의 재	③ 제1항 및 제2항
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